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9

2023. 10. 16.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우종혁의원 대표발의(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및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시행규칙(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2023. 10. 5. ~ 10. 9.(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강남구민이 디지털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자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임.

○ 기존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이들 매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존 미디어의 이용행태를 변화시키고 있고,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목적에 그 교육 대상을 “강남구민”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개념 설정이 바람직한지, 이러한 상위법 용어 인용이 필요한지도 의문임.

○ 본 조례안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기본계획(안 제4조)와 지원 사업(안 제5조)를 규정하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정책과 사회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정보화 교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화된 교육사업을 운영할 것을 지침화 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침적 조례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며, 집행부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본 조례안의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기에 별도의 비용추계를 검토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수집·저장·가공·처리·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4.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 자료 개발

3.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